

瑞山市地方工業團地造成 및 分讓에 관한 條例廢止 條例案
審 查 報 告 書

1. 審 查 經 過

가. 提出日字 : 1999. 4. 9

나. 提出者 : 瑞 山 市 長

다. 回附日字 : 1999. 4. 9

라. 上程日字 : 1999. 4. 14

2. 提案說明要旨(提案說明: 地域經濟課長 文哲柱)

가. 廢止理由

- 본 조례 제정당시 근거법이었던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및 지방공업개발법이 폐지되었고,
- 현재는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업무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조성 및 분양관리되고 있으므로 조례로 다시 정할 필요가 없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음.

나. 主要骨子

- 서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폐지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앞서, 폐지사유에서 설명드렸듯이
 - 본 조례의 근거법인 “산업기지개발촉진법및지방공업개발법”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,
- 대신,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업무는
 - “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”에 의거 처리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짐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없었음.

5. 討 論 : 없었음.

6. 少數意見 : 없었음.

7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 58 호
의결년월일	1999. . . (제 회)

서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9. 4. 9 .

서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58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4. 9.

제출자 : 서산시장

□ 폐지사유

- 본 조례 제정 당시 근거법인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및 지방공업개발법이 폐지되었으며,
- 현재는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업무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조성 및 분양관리되고 있으므로 조례로 다시 정할 필요가 없음.

□ 주요골자

- 서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폐지

□ 기타 참고사항

- 관련법규
 -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
 -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
서산시 조례 호

서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

서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